

고용유지(유급휴직)지원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2.06.22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



1. 건 명: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대표자명)	사업장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유한회사 나드리투어 (박○식)	324-86-012**-0	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1,707,180원	1,707,180원	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	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(3회)	전남 목포시 수문로 이하생략

4. 공고기간: 2022.06.22. ~ 2022.07.06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서하은(Tel. 061-280-05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